

펄크 금지 시한 임박

주상복합 시설에서 12월21일부터 펄크 금지

주

상복합 건물에서 펄크 사용이 오는 12월 21일로 금지된다. 연방 EPA 규정 40 CFR Part 63 Subpart M 하에 모든 주상복합 건물에 자리한 펄크 드라이클리너들은 2020년 12월21일 까지 펄크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이 규정 하에 펄크 드라이클리너들은 12월21일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업소 내의 펄크 그리고 펄크로 오염된 폐기물을 머신에서 제거하고 규정에 맞게 버려야 한다.
- (2) 펄크 드라이클리닝 머신의 모든 연결을 완전히 끊거나 업소에서 제거해야 한다.

주상복합 건물에서 펄크 사용 중단 규정이 발동하게 되면, 각 주정부가 발급한 펄크 머신에 대한 퍼밋이 12월 21일 기해 자동으로 종료된다. 또한 이날까지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소는 연방 규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방 EPA는 지난 1993년 제정한 펄크 대기 방출 기준에 관한 법규 하에 이미 2006년 7월27일부터 주상복합 건물에서 신규 펄크 머신 설치를 금지하고 있었다.

다음에 이번 펄크 금지가 갖는 의미를 다양하게 짚어본다.

▲ 주상복합의 의미

주상복합(co-located) 시설이란 거주지와 한 건물에 자리한 드라이클리닝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주거지(residence)란 호텔처럼 같은 사람이 180일 이내로 묵는 단기 하우징을 제외한,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주거지와 주택을 의미한다.

▲ 15년 유예 기간

연방 EPA가 지난 2006년 주상복합 시설에서 펄크 사용 금지법을 채택했을 당시 15년이란 유예 기간을 두면서 그때면 모든 펄크 시설이 대체 솔벤트로 전환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뉴욕 시처럼 소방규제에 발목이 잡힌 지역에서는 아직도 펄크 사용 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 뉴욕시 펄크 클리너들의 미래

미국에서 주상복합 시설이 가장 많은 뉴욕시는 거의 모든 세탁소들이 주상복합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시는 뉴욕 주의 다른 지역과 달리 불이 붙을 수 있는 대체 솔벤트를 사용할 경우 업소 전체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는 스프링클러 설치는 하지만 5년에 5년 옵션이 전형적인 뉴욕시에서 그런 투자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이번 규제에 저촉되는 상당수의 뉴욕시 펄크 클리너들이 웨트클리닝으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거나, 드랍 스토어로 전환할 것이 예상된다.

▲ 뉴욕시에서 대체 솔벤트 사용 제한

뉴욕시에서 대체 솔벤트를 사용할 경우 시설 규모를 2000 스퀘어 피터 이하, 총 머신 용량 60 파운드 이하로 제한하는 조닝 코드의 저촉을 받는다. 그 결과 규모가 큰 펠크 클리너는 대체 솔벤트로 전환을 미루게 됐다. 이 규정은 또한 한 업소당 머신 1대란 제약과 같아 향후 시설 확장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뉴욕시에서 스프링클러 없이 대체 솔벤트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내년부터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 2020년 12월21일 연장 가능성

주상복합 시설에서의 펠크 사용 마감 시한이 변경될 가능성은 적다. 이 규정은 EPA의 2005년과 2006년 펠크 규제 수정 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후 제안됐다. 그리고 세탁소가 무리 없는 전환을 할 수 있게 15년이란 유예 기간을 부여 했다. 이런 평가는 NCA와 할로겐 솔벤트 산업연합(HSIA)이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전 뉴욕주 환경보호부 단속 책임자 에릭 웨이드 씨는 어메리칸 드라이클리너 지와의 인터뷰에서 마감일자 연장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펠크 드라이클리너에 대한 규정은 옆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볼 수 있다. ■

